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 . . . (제 회)	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고용노동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산업현장의 전문인력 현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안전·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전문기관 업무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, 타워크레인 설치·해체업의 보유인력이 변경된 경우 등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11. 27. ~ 2025. 1. 6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임하거나 위탁을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
제20조제3항 전단 중 “제6항”을 “제7항”으로 한다.

제2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사업주는 산업보건의를 해임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
제72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업체의 보유인력

제115조제52호 중 “제16조제6항”을 “제16조제6항·제7항”으로, “제29조제3항”을 “제29조제3항·제4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안전관리자 등의 해임 및 업무위탁 해지에 관한 적용례) 제16조 제7항 및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산업보건과의 해임에 관한 적용례)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업보건의를 해임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타워크레인 설치·해체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타워크레인 설치·해체업은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7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을 완료해야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안전관리자의 선임 등) ① ~ ⑥ (생략) <신설>	제16조(안전관리자의 선임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임하거나 위탁을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제20조(보건관리자의 선임 등) ① · ② (생략) ③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별표 3”은 “별표 5”로, “안전관리자”는 “보건관리자”로, “안전관리”는 “보건관리”로, “법 제17조제5항”은 “법 제18조제5항”으로, “안전관리전문기관”은 “보건관리전문기관”으로 본다.	제20조(보건관리자의 선임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제7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제29조(산업보건의의 선임 등) ① ~ ③ (생략)	제29조(산업보건의의 선임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④ (생 략)

제72조(타워크레인 설치·해체업의 등록요건) ① (생 략)
② 법 제82조제1항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~ 3. (생 략)

<신 설>

제115조(권한의 위임)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.

1. ~ 51. (생 략)

52. 제16조제6항, 제20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접수

52의2.·53. (생 략)

④ 사업주는 산업보건의를 해임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
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

제72조(타워크레인 설치·해체업의 등록요건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업체의 보유인력

제115조(권한의 위임) -----

-----.

1. ~ 51. (현행과 같음)

52. 제16조제6항·제7항-----
-- 제29조제3항·제4항-----

52의2.·53.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8997